

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**외국인투자기업**”을 “**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**산업통상자원부**”를 “**산업통상부**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**산업통상자원부장관**”을 “**산업통상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**산업통상자원부장관**”을 “**산업통상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**산업통상자원부장관**”을 각각 “**산업통상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**산업통상자원부장관**”을 “**산업통상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**산업통상자원부장관**”을 “**산업통상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**예비평가, 현장실태조사**”를 “**예비평가**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현장실태조사는 제2항의 예비평가 시 성과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**현장실태조사**”를 “**현장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**산업통상자원부장관**”을 “**산업통상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산업통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경제자유구역위원회”를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, “6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
1. “성과평가위원회”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, <u>외국인투자기업의</u> 경영활동 지원,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사무처리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전반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<u>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“종합평가”란 <u>산업통상자원</u> 부가 경자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의 연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.	2. 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이 실시하는 경제자유구역 종합평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4조(성과평가위원회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5조(성과평가위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종합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0명 내외의 성과평가위원을 위촉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 소정의 평가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및 통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 성과평가에 필요한 종합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, 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성과평가 자료의 제출 등) 제9조의 종합평가계획을 통지

제4조(성과평가위원회) ① 산업통상부장관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성과평가위원) ① 산업통상부장관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산업통상부장관-----

제9조(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및 통지) ① 산업통상부장관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성과평가 자료의 제출 등)

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서, 자체평가 결과보고서, 전년도 성과평가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된 일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종합평가) ① 종합평가는 예비평가, 현장실태조사, 본 평가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한다.
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③ 현장실태조사는 평가대상 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예비평가를 통해 도출된 검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수행한다.

④·⑤ (생략)
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서 도출된 평점을 토대로 평가대상별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.

----- 산업통상부장관-----
-----.

제11조(종합평가) ① -----
예비평가-----
-----.
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현장실태조사는 제2항의 예비평가 시 성과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현장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
에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제12조(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및
이의신청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
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
가결과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청
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제자
유구역청은 이의가 있을 경우
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
에 한하여 이의신청 내용과 관
련 소명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
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
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을
고려하여 자체검토 또는 성과평
가위원회 재평가를 통해 이를
검토·확정한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
에서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경제
자유구역에 대한 종합평가결과
를 경자법 제25조의 경제자유구
역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
여 의결한다.

제13조(자체평가의 실시) ① ~
③ (생략)
④ 경제자유구역청은 제1항의
자체평가대상에 대해서는 자체

제12조(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및
이의신청) ① 산업통상부장관-

-----.

② -----

----- 산업통상부장관-
-----.

③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④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제13조(자체평가의 실시) ① ~
③ (현행과 같음)
④ -----

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<u>경제자유구역위원회</u>의 종합평가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 --.
제16조(재검토기한)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6월 31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6조(재검토기한) <u>산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6월 30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.